

#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 안	
번 호	635

발의년월일 : 2010. 8. 3/  
발의 의원 : 정수현, 채명지의원

## 1. 제안이유

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와 의원의 보충질문 준비 등으로 군정질문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○ 군정에 대한 질문 조항 신설(안 제66조의2)

- 답변방식 및 질문시간을 규정하고
- 질문요지서의 송부시기를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에서 질문시간 96시간전까지로 변경
- 질문요지서에 대한 답변서의 도달시기를 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로 신설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 및 제71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사항 없음
- 다. 개정조례안 : 붙임
- 라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규칙 제 호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 중 제4항을 삭제한다.

제66조 다음에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6조의2(군정에 대한 질문) ①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(이하 “군정질문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② 군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병행하되,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 답변의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내에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방식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보충질문은 각 의원별로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.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.

④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96시간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

⑤ 군수는 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 제4항의 질문요지서에 대한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은 해당의원에게 이를 지체없이 배부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6조(군수 등의 출석요구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 설)</p>	<p>제66조(군수 등의 출석요구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삭제)</p> <p>제66조의2(군정에 대한 질문)</p> <p>①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(이하 “군정질문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군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병행하되,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하고,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내에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.</p> <p>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보충질문은 각 의원별로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.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.</p> <p>④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96시간전</p>

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

⑤군수는 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 제4항의 질문요지서에 대한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이를 지체없이 배부하여야 한다.

## 관 계 법령

### [지방자치법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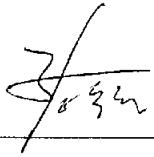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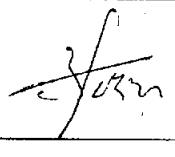
- 제42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제71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【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】

- 정수현 의원 외 1인 발의 -

## 서명날인서

의원명	서명	날인
정수현		
채명지	채명지	